



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결과요지

2020. 9. 24.

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지원단

<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>

1. 「법원관사 등 배정기준」 중 비연고 개념(재정·시설분과위원회 회부 안건)

- 「법원관사 등 배정기준」에 예시된 '연고법관에 해당하는 경우'를 삭제하고 '비연고'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인사발령 시 근무지[법원 또는 지원 소재 시·군. 다만,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법원(여주, 평택지원 제외)의 경우는 서울 및 경인지역]에 본인의 거주지(주소지)가 없고, 출·퇴근이 곤란하며,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

2. 외국인 체포·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(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)

- 적법절차 원리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, 법원은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·구속되는 경우, 법원이 직접 영사통보의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비엔나영사협약 등에 따른 '영사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'를 보장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규,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하여 체포·구속에 관한 영사통보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

3.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(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)

-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민사·행정·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-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
-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
-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이 상당하고,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

4.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(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)

-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,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,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,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



5. 재판제도 분과위원회,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

-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·검토할 안건으로 ① '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', ② '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', ③ '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'을 정하여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
-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·검토할 안건으로 ① '전문법관 확대 방안', ② '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'을 정하여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

6.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(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)

-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승진최저소요연수인 3년 6개월이 도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, 현장부서 근무경력 요건으로 특별승진 신청 시 까지 6~7급 통산하여 50% 이상자만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운영함
- 특별승진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험승진 응시제한자도 특별승진 심사대상에 포함하며, 심사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, 승진시험응시와 특별승진신청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함
- 특별승진 심사절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단위의 각 선발을 거치고 법원행정처에서 최종 선발하는 3단계 절차로 운영하며,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연계된 직무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함
- 세부적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나 방법, 규정 개정사항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함



7.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실시와 관련한 안건

-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'법원장 추천제'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고,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2020년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함

8. 장기근무제도 연구결과 보고 및 관련 논의(법관인사분과위원회 회부 안건)

-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,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전국 43개 법원(서울권, 경인권, 지방권)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장기근무제도 시행시 법관책임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·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

<다음 회의 일정>

- 제9차 사법행정자문회의(임시회의): 2020. 10. 29.(목) 10:30 개최 예정